

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한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9627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9. 27.

발의자 : 한선교 · 김석기 · 이종배

이철규 · 염동열 · 이양수

송희경 · 김규환 · 함진규

이철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만화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, 연구기관 및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이나 부적정한 교육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어 교육생들의 피해와 정부 예산의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.

이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5조제3항 신설).

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
3.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 성) ① ~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 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 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</u> <u>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</u> <u>2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 을 하지 아니한 경우</u> <u>3.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 게 된 경우</u></p>